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심사보고

'93. 4. 12
내무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者 : 충청북도지사

나.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

· 提出日字 : 1993년 6월 2일

· 回附日字 : 1993년 6월 2일

다. 上程日字 : 제 90 회 임시회

·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3. 6. 10) 상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提案說明 要旨

(提案說明者 : 재무국장 김 용 덕)

가. 提案理由

- '93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'92년도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였으나,
-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도유재산의 신규취득 및 매각등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, 효율적인 도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(1) 재산의 취득

- 가축위생시험소 증부지소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
 - 부지매입 :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09 외 2필지 5,654 m²
 - 청사신축 :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09 번지 500 m²

-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신축부지 매입
 - 청주시 가경동 택지개발사업지구 3부락 3논트 515.9 m²

- 증평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
 -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81번지 2,774 m²

- 증평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
 - 부지매입 : 괴산군 증평읍 송산리 208 번지 2,919 m²
 - 건물신축 : 괴산군 증평읍 송산리 208 번지 977 m²

(2) 재산의 매각

- 주택건축민원에 따른 진입토지 매각
 - 청주시 사직동 604 - 80 53 m²

(3) 무상사용 허가

- 충북체육회관 건립부지 무상사용 허가
 - 청주시 방서동 38-1 외 4필지 5,912 m²

4. 檢 討 報 告 要 旨

(검토자 : 전문위원 이 청)

가. 재산의 취득

○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

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의 방역체제 구축과 전염병등의 질병확산을 방지하여 양축농가를 보호 육성하게 되는 바,

'93년 6월부터 12월까지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0번지의 2필지에 부지 5,654㎡, 건물 500㎡를 신축코져 하는 것으로,

가축의 질병예방을 연구 검토하여 양질의 가축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재산의 취득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신축부지 매입

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 가경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515.9㎡에 건물 300㎡를 94년까지 신축코져 하는 것으로

앞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지역특산물을 직거래할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촌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본 재산의 취득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증평쓰레기 매립 부지매입 및 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

증평쓰레기 매립 부지는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45,588 m²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부지내 1필지 2,774m²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,

증평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

증평주민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93년 6월부터 12월까지 증평읍 송산리 208번지에 부지 2,919 m², 건물 977m²를 신축코져 하는 것으로,

증평주민의 문화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본 재산의 취득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재산의 매각

청주시 사직동 604-80 대지 53m²는 도유재산으로 인근지역 소유자가 진입로가 없어 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매각을 요구한 민원사항으로서 본 재산은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어,

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대지로서 재산의 효용가치가 희소한 바,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라 사료됨.

다. 체육회관 건립부지 무상 사용허가

충북체육의 자활 기반구축과 체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도유지인 청주시 방서동 38-1번지에 부지 5,912m²에 체육회관을 건립하여 도에 기부코져 하는 바,

충북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재산의 사용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: 해당사항없음

5. 討 論 要 旨 : 해당사항없음

6. 審 査 結 果 : 도 원안대로 의결 (참석10, 찬성 10)

7. 小 數 意 見 要 旨: 해당사항없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해당사항없음

9. 添 附 書 類

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(안)